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24
----------	------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 보훈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규정함(안 제3조).
- 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규정하여 의전상의 예우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가 설치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와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체서 : 별 첨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321,200천원

○ 산출기초 : 별첨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 (별첨)

○ 입법예고 : 2007. 9. 21 ~ 2007. 10. 11(20일간)

기타참고사항 : 별첨

○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조례 준칙(안)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보훈관련 시설물의 정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보훈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

제8조(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의 추진과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주민생활지원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억 용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담당 김 종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종 수 (행정 2862)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24
----------	------

제안년월일 : 2007. 11. 21.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호를 신설함.

2. 주요 골자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3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제7조(복지 지원 등)</p> <p>.....</p> <p>.....</p> <p>1. ~ 2. (원안과 같음)</p> <p>3. <u>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u></p>